

범주: 학생 발행: 2011/7/22 번호: **A-832**
주제: 학생 대 학생의 차별에 기반한 괴롭힘, 협박 및/또는 왕따 페이지: 5 의 1

개요

인종, 피부색, 신념, 민족, 출신 국가, 시민권/체류 신분, 종교, 성별, 성 정체성, 성 표현, 성적 취향, 장애 또는 몸무게 등에 따라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, 협박 및/또는 왕따 시키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하고 편안한 학습 및 교육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뉴욕시 교육청의 정책입니다. 이런 괴롭힘, 협박 및/또는 왕따는 수용될 수 없는 행동이며 이런 행동이 교육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나거나 또는 학교 커뮤니티의 보건, 건강, 도덕 또는 안녕에 해를 끼친다면 학교, 학교 수업시간, 학교 방과 전 및 후, 학교 건물 내, 학교 후원 행사 또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 및 학교 건물이 아닌 장소에서 절대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. 본 규정서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들어난 학생들은 규율규정 및 교육감 규정 A-443에 부합하는 적절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. 또래 간의 성희롱에 관한 불평 접수는 교육감 규정 A-831를 참고하십시오.

I. 정책

- A. 인종, 피부색, 신념, 민족, 출신 국가, 시민권/체류 신분, 종교, 성별, 성 정체성, 성 표현, 성적 취향, 장애 또는 몸무게 등에 따라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, 협박 및/또는 왕따 시키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하고 편안한 학습 및 교육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뉴욕시 교육청의 정책입니다. 이런 차별에 따른 괴롭힘, 협박 및/또는 왕따는 금지되어야 합니다.
- B. 학생 대 학생 괴롭힘, 협박 및/또는 왕따가 의심되는 상황을 보고하거나 이런 행동과 관련된 조사를 돕는 학생, 교사 또는 교직원에게 어떤 보복 행위도 금지하는 것이 뉴욕시 교육청의 정책입니다.
- C. 다른 학생 또는 학생들에게 학생 또는 학생 집단이 직접적으로 행한 차별에 기반한 괴롭힘, 협박 및/또는 왕따로 간주되는 서면, 구두 또는 행동에는: (1) 학생의 실질적 또는 직관적인 인종, 피부색, 신념, 민족, 출신 국가, 시민권/체류 신분, 종교, 성별, 성 정체성, 성 표현, 성적 취향, 장애 또는 몸무게 등에 기반한 경우; 및 (2) 학생이 교육적인 프로그램, 학교 후원 활동 또는 기타 학생의 교육 분야 등과 관련된 활동의 참여나 이런 활동으로부터 받는 혜택을 심각하게 저해한 경우; 또는 (3) 공격적이고, 무례하고 또는 두려운 학교 환경을 조성한 경우; (4) 학생의 정신적, 정서적 또는 신체적 안녕을 심각하게 저해한 경우; 또는 (5) 학생의 교육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. 차별에 기반한 행동에 대한 정의는 첨부 번호 1에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.
- D. 차별에 기반한 괴롭힘, 협박 및/또는 왕따는 다양한 형태를 띠 수 있으며 육체, 언어, 글쓰기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. 글로 표현된 괴롭힘, 협박 및/또는 왕따에는 인터넷, 핸드폰, 개별 디지털 기기 또는 무선 기기 등을 포함한 전자 제품을 이용한 내용 전달 행위가 포함됩니다.

범주: 학생 발행: 2011/7/22 번호: **A-832**
주제: 학생 대 학생의 차별에 기반한 괴롭힘, 협박 및/또는 왕따 페이지: 5 의 4

IV. 후속 조치

- A. 적절하다면, 신고 학생 및 가해 학생을 가이던스 카운슬러, 학교 소셜 워커, 심리사 또는 기타 적절한 학교 직원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.
- B. 적절하다면, 학교장/지명 담당자는 감수성 훈련, 상담 및/또는 상담을 위해 커뮤니티 기관으로의 추천, 지원 및 교육을 포함한 중재 방법을 활용하도록 합니다.
- C. 본 규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결정된 학생들은 교육청의 규율규정 및 교육감 규정 A-443에 따른 적절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.
- D. 학교장/지명 담당자는 반드시 신고된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V. 통보

- A. 각 학교는 반드시 "모든 사람 존중"에 관한 포스터를 학생, 학부모 및 교직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눈에 띄게¹ 게시하여야 합니다. 해당 포스터에는 반드시 RFA 연락 담당의 성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(첨부 번호 3 참조).
- B. "모든 사람 존중" 책자의 사본을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매년 배포하여야 합니다 (첨부 번호 4 참조). 학년도 중간에 학교에 등록하는 학부모/학생에게 반드시 등록 시점에 관련 사본을 전달하여야 합니다.
- C. 각 학교장/지명 담당자는 반드시 본 규정서에 정해진 정책과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고 매년 10월 31일까지 학생 및 교직원과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하여야 합니다.
- D. 본 규정서의 사본은 학부모, 교직원 및 학생의 요청이 있을 때 전달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.

VI. 통합 학교 및 청소년 개발 계획

- A. 각 학교는 반드시 10월 31일 까지 연례 통합 학교 및 청소년 개발 계획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:
 - 1. FRA 연락 담당의 성명.
 - 2. 최소 1인의 FRA 연락 담당이 학년도 내에 인종, 피부색, 신념, 민족, 출신 국가, 시민권/체류 신분, 종교, 성별, 성 정체성, 성별 표현, 성 취향, 장애 및 몸무게 등과 관련된 인간 관계에 관한 OSYD 연수를 받았거나 받을 것 이라는 증명서.
 - 3. 본 규정서에 소개된 정책 및 절차가 학생 및 교직원과 논의 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.
 - 4. 차별에 따른 괴롭힘, 협박 및/또는 왕따를 예방하고 밝힐 수 있는 계획.

¹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"학부모"란 용어는, 학생의 부모(들), 또는 보호자(들) 또는 학생과 부모 관계 또는 법적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(들) 또는 학생이 18세 이상이거나 독립한 미성년자일 경우 학생 본인을 의미합니다.

범주: 학생

발행: 2011/7/22

번호: **A-832**

주제: 학생 대 학생의 차별에 기반한 괴롭힘, 협박 및/또는 왕따

페이지: 5 의 5

VII. 비밀보장

본 규정에 따라 신고된 내용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 및 목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교육청의 정책입니다. 그러나 비밀보장의 필요성은 반드시 경찰 조사에 협조할 의무, 가해자에게 이의제기 기회 제공 및/또는 조사와 신고 내용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아야 할 것입니다. 따라서 신고 내용에 관련된 정보는 적절한 상황에서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.

VIII. 보복

학생들은 학생 대 학생 괴롭힘, 협박 및/또는 왕따가 의심되는 상황을 보고하거나 이런 행동과 관련된 조사를 돕는 학생, 교사 또는 교직원에게 어떤 보복 조치도 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. 보복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며 적절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.

IX. 문의

본 규정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십시오:

전화:
212-374-6834Office of School and Youth Development
NYC Department of Education
52 Chambers Street, Room 218
New York, NY 10007팩스:
212 374-5751